仲裁硏究, 第 24 卷 第 4 號
2014년 12월 1일 발행, pp. 127~145

논문접수일 2014. 10. 1.
심사수정일 2014. 10. 25.
게재확정일 2014. 11. 5.

변경을 가한 승낙에 관한 CIETAC 사례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IETAC Case about Acceptance with Different Terms
- Focus on CISG -

강호경*
Ho-Kyung Kang

〈목 차〉

Ⅰ. 서 설
Ⅱ.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
Ⅲ. 사안의 개요
Ⅳ. 사안의 검토
Ⅴ.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CIETAC, CISG, 변경된 승낙

*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Ⅰ. 서 설

중국은『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하 'CISG'이라 한다)의 원체약국이자 전세계적으로 CISG를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재기관 중 하나[1]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이하 'CIETAC'이라 한다)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5년에 CISG가 발효됨에 따라 중국당사자와의 분쟁에 CISG의 직접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우리기업과 중국당사자 간의 분쟁에 CISG의 적용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따라서 CISG가 적용된 사례를 발굴하여 연구·분석하는 것은, 국제거래에서 분쟁예방과 분쟁발생시 기업들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상대방 국가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에는 현지의 법률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IETAC의 사례연구는 우리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한편,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려는 당사자로서는 계약의 성립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근본적 방어수단이 될 것이므로,[3]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한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특히, CISG는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이 가해진 승낙의 경우에는 승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성립의 전제가 되는 승낙의 변경이 실질적인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간의 선행연구는 중국계약법과 CISG 규정간의 비교연구만 일부 진행되었을 뿐, 관련사례가 연구된 바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제2장에서는 CISG에서 규정하는 승낙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전술한 논거를 바탕으로 대상판결과 함께 유사사례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서 CISG에서 규정하는 변경된 승낙에 대한 CIETAC의 태도를 확인하여 제5장에서 우리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1) 그 이유에 관하여 자세히는 오원석·송수련, "CIETAC(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 및 CISG 적용에 관한 연구",「무역학회지」제36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1, 212-213면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는 송수련, "CISG상 손해배상과 대금감액의 관계에 관한 중국 CIETAC의 중재사례 연구",「한국무역상무학회지」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134면 참조.
3) 지원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한국의 매매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의 개정과 관련하여－",「법학논총」제31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70면.

Ⅱ.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

1. CISG상의 승낙(Acceptance)

CISG는 전통적인 계약법리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됨을 규정한다. 즉, CISG는 원칙적으로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를 승낙으로 인정하지만(제18조 제1항),[4]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한 경우에 그 성격에 따라 효과를 달리하도록 규정한다.

먼저, CISG 제19조 제1항[5]은 전통적인 영미법의 법리에 따라 청약에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응답은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임을 규정한다. 즉, 청약의 조건에 변경을 가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는 것도 청약에 대한 거절로 본다.[6] 다만, 동조 제1항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가해진 응답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동조 제2항은 변경이 가해진 응답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청약을 변경하는 승낙의 효력여부는 그러한 변경이 실질적(materially)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이에 대한 판단은 동조 제3항에 따른다.

2. 실질적 변경(Materially Different Term)

(1) 실질적 변경의 해석 기준

승낙에 포함된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이 실질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CISG 제19조 제3항[7]은 실무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질적 변경의 해석기준을 제

4) 이하에서 법명의 기재없이 조문만 기술되는 것은 CISG의 그것이다.

5) CISG 제19조 제1항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offer.

6) 이때 CISG는 청약에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이 포함된 응답이나 피청약자가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의도를 탐색하기 위한 독립된 통신으로 간주하여 반대청약(counter offer)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오원석, "청약을 변경하는 승낙(acceptance with modifications)의 효과와 문제점 - CISG 제19조를 중심으로 -", 「무역상무학회지」제2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77면). 물론, 반대청약에도 청약에 관한 일반법리가 적용되어, 청약자에 의한 승낙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시한다. 즉, 대금, 대금지급, 예컨대, 송금방식에서 신용장방식으로의 변경, 물품의 품질과 수량, 예컨대, 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2등급을 1등급 물품으로의 변경, 인도의 장소와 시기, 예컨대, FOB규칙에서 CIF규칙으로의 변경,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 예컨대, 중재합의나 관할합의 등의 변경 등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 열거된 조건들의 변경'만'이 '항상' '반드시'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송부한 승낙이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나, 피청약자의 의도가 실질적인 변경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다수설은 평가여지를 인정한다.[8] 즉, 동조 제3항은 실무적으로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변경으로 의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나열한 것일 뿐, 동조 제3항으로 당사자자치를 제한하거나 청약자나 피청약자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동항에 열거된 사안들이 항상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밖의 사안이라고 하여 항상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9]

그 결과 실질적인지의 여부는 개별 상황하에서 청약의 변경된 내용을 수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주문의 크기나 당사자 간의 관계 또는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다.[10] 또한, 완전합의조항(merger clause)이나 구두변경금지조항(no-oral-modification clause)의 변경이나 물품의 디자인이나 외관(예컨대, 색상)이 변경되는 경우에 동조 제3항은 그러한 변경이 제품의 가치와는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동조 제3항이 실질적인 변경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모두 나열하지 않은 것은, 동조의 적용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재판부 또는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개별상황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11]

(2) 실질적 변경의 해석 예외

CISG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변경이더라도 실질적인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매수인이 승낙에서 대금지급일을 14일 연장한 경우나(대금, 대금지급),[12]

7) CISG 제19조 제3항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place and time of delivery,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8) 동지, Allan E. Farnsworth, Article 19 IN Bianca-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è, 1987, p. 182; Schroeter, *ibid.*, p. 340;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92면; 최홍섭, 「유엔국제매매법」, 인하대학교출판부, 1997, 55면; 이기수·신창섭, 「국제거래법(제5판)」, 세창출판사, 2013, 45면.

9) 강호경, "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 서울고법 2013.7.19. 선고 2012나59871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63권, 2014년, 7-8면.

10) Schroeter, *ibid.*, p. 342.

11) Allan E. Farnsworth, *ibid.*, pp. 182-183.

청약에서 '3월 15일 이전 인도'에 대하여 매도인이 '4월'로 인도시기를 변경하여 승낙을 한 경우(인도시기),[13] 또는 당사자의 은행정보가 수정된 경우(지급)나, 동일한 도시 내에서 구체적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인도장소)에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선적항이나 선박 또는 선적일자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결정하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빈번한바, 이 경우에 청약과 승낙 간 내용의 차이는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실질적인 변경이기는 하지만 청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청약보다 큰 폭의 할인이나 무료운송 그리고 담보기간의 연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청약에 가해진 변경이 객관적으로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피청약자의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4]

요컨대,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더라고 당사자 간의 관행이나 협상 또는 관습, 나아가, 청약과 승낙 간의 차이 등 개별상황에 따라 실질적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데,[15] 이때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의 의무를 변경시키는지 여부가 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변경은 실질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16][17]

(3) 법적 효과

청약에 변경을 가한 조건이 실질적인 경우에, 그러한 변경이 효력을 가지는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거절이 되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변경이 가해진 승낙은 청약에 대한 반대청약이 되어 새로운 청약이 된다. 새로운 청약에는 CISG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청약에 관한 일반법리가 적용되므로, 새로운 청약은 철회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다. 이때, 반대청약이 CISG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약으로서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승낙의 의도상 변경을 가한 조건이 아닌 조건에 대하여는 승낙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청약의 조건이 반대청약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변경이 가해진 승낙은 반대청약, 즉, 새로운 청약이 되므로 계약체결을 위하여 CISG 제18조에 따라 원청약자의 승낙이 다시 요구된다. 이때 원청약자가 원래

---

12) LJN: AF5674, Gerechtshof's-Hertogenbosch, C0200320/HE, 25-Feb-2003, CISG-online no. 1834.
13) Oberlandesgericht Naumburg, 9. Zivilsenat, 27.04.1999, 9 U 146/98, CISG-online no. 512.
14) Schroeter, *ibid.*, p. 342.
15) Peter Schlechtriem, *Uniform Sales Law - The UN-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nz, 1986.
16) Contract Formation under the CISG, *Executive Legal Summary* 233, Database updated June 2014.
17) 그러나 이와는 달리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변경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승낙상의 변경은 비실질적인 것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Peter Winship, *Formation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under the 1980 Vienna Convention*, 17 International Lawyer, 1983, p. 12).

의 조건으로 변경하여 승낙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청약이 되어 상대방의 승낙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이 과정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를 서식의 전쟁(battle of form)이라고 하는데, 개별기업이 표준양식(예컨대, 'offer sheet' 또는 'purchase order')을 사용하는 현대의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기업별로 표준화된 구매승인서나 거래제안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양식의 뒷면에 기재된 표준약관이 상이하다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18] 다만, 이에 관한 연구는 그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본 사건에서는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은바,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놓는다.

3. 비실질적 변경(Immaterially Different Term)

(1) 조건이 변경된 승낙

전통적인 영미법의 법리에 따르면 승낙은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에 따라 청약에 대한 무조건적이고도 절대적인 동의이어야 하므로, 청약의 조건을 사소하게라도 변경하는 응답은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19] 그 결과 응답에서 사소한 변경으로 인한 계약체결이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최근에는 영미법계에서도 경상의 원칙을 수정하는 추세이다.[20]

CISG 또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함과 동시에 대륙법계의 법리를 반영하고자, 청약에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응답이라도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승낙으로 인정한다. 즉, CISG는 제19조 제2항에서[21] 동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인 조건은 물론 청약의 조건과 상이한 조건 또한 승낙이 된다고 규정하여,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의 청약에 대한 응답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변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바, 이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청약의 해석에 있어 청약이 그러한 문제를 이미 제안하고 있는지 여부가 된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확한 번역이나 오타 등에 의한 단순한 표현의 차이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18) Peter Winship, *ibid.,* p. 12.

19) Allan E. Farnsworth, *Contracts,* Aspen Law & Business, 1999, pp. 146-147.

20) 예컨대, 미국의 통일상법전(UCC) §2-206조 제3항 "…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에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다".

21) CISG 제19조 제2항 1문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or, without undue delay, objects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나아가, 청약에서 인도시기 '3월 15일보다 늦지 않게(no later than 15 March)'를 피청약자의 응답에서 '4월(April)'로 변경한 경우에, 법원은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22] 또한, 부적합통지(complaints)는 송장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거나[23] 가격이 상승 중인 상황하에서 오픈 프라이스 조건을 연장하거나,[24] 9월 25일에서 10월 9일로의 대금결제시기를 변경하거나,[25] 매도인이 청약에서 무료인도(free building site)를 제안하였으나 매수인이 운송비를 스스로 부담하겠다거나,[26] 양당사자가 FOB규칙으로 합의한 이후에 매수인이 승낙에서 선박령이나 운임의 지급과 같은 선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 등은 비실질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27]

(2) 조건이 부가된 승낙

승낙에서 피청약자가 부가한 조건은 청약이 침묵하는 문제일지라도 CISG의 규정이나 Incoterms와 같은 관습 또는 당사자 간의 관행 등으로 보충될 수 있는 경우에, 부가된 조건은 이들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예컨대, 매수인이 청약에서 준거법을 CISG로 지정하였고 매도인이 승낙에서 물품검사는 단기간 이내에 이행되어야 하고 부적합통지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경우에, 이는 CISG 제38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일치하므로, 매수인의 청약에서 묵시적인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승낙으로 인정된다.

이와는 달리, 부적합의 성질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조건을 승낙에서 추가한 경우에, 이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CISG 제49조에 위배되므로, 매도인의 청약에서 묵시적인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8]

(3) 법적 효과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없이 변경된 승낙의 조건에 대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실질적인 조건이 가해진 승낙의 선언은 승낙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은 승낙의 효력발생시에 체결된다(제23조). 이때 비실질적인 조건은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다.

그러나 청약자가 승낙의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

22) Oberlandesgericht Naumburg, 9. Zivilsenat, 27.04.1999, 9 U 146/98, CISG-online no. 512.
23) LG Baden-Baden 14 August 1991,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abstract no. 50.
24) Cour de Cassation, Première chambre civile, 04.01.1995, 92-16.993, CISG-online no. 138.
25) LJN: AF5674, Gerechtshof's-Hertogenbosch , C0200320/HE, 25-Feb-2003, CISG-online no. 1834.
26) Oberlandesgericht Koblenz 4.10.2002, 8 U 1909/01, CISG-online no. 716.
27) Schroeter, *ibid.,* p. 344.
28) Schroeter, *ibid.*, p. 337.

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인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피청약자의 응답은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이때 청약자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부당한 지연이 있으면 아니된다.[29]

이때, 부당한 지연은 최대 3영업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우편보다 전자통신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때 부당한 지연은 구두와 그 밖의 방법 모두에 적용된다.[30] 다만, 그 밖의 방법은 발송시에 효력을 가지므로 우송중의 분실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가 부담한다.

청약자가 비실질적인 변경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청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변경을 가한 응답은 유효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청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 피청약자는 승낙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청약자가 변경된 승낙의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그러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조건이 계약조건이 되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은 체결된다.[31]

Ⅲ.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01년 2월 7일에 호주 매도인(신청인)은 중국 매수인(피신청인)의 요청으로 2001년산 호주 목화에 관한 최신가격을 팩스로 통지하였으며, 2001년 2월 13일에 매수인은 2001년산 호주 목화 2천 톤을 구매하기 위한 서한을 송부하였다.
2. 2001년 2월 14일에 매도인은 팩스를 통하여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서(sales confirmation)를 송부하였으며, 이를 수령한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의 조건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 변경 그리고 삭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수인은 각각의 분할인도분 500톤, 700톤 그리고 800톤을 500톤씩 4개의 인도로 수량을 조정하였다.
   (2) 2001년 4월, 5월 그리고 6월의 선적일을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로 변경하였으

29) 이때 반대의 통지는 불일치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단순 지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석광현, 전게서, 92면).
30) Schroeter, *ibid.*, pp. 345-346.
31) CISG 제19조 제2항 2문 If he does not so object, the terms of the contract are the terms of the offer with the modifications contained in the acceptance.

며, '2001년'을 삭제하였다.

(3)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조항 2개를 삭제하였다.

3. 매도인이 구두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양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다.
4. 2001년 4월 19일에 매수인은 "당사가 주문한 2001년산 호주 목화 2천 톤에 대하여, 정부쿼터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인일 또한 알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서한을 매도인에게 송부하였다.

2. 사안의 쟁점

1) 매도인의 주장

매도인이 매매계약서를 송부한 이후에 매수인은 일부 조건을 변경 및 삭제하였으므로 매수인의 응답은 반대청약이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반대청약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구두로 승낙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양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계약은 체결되었다.

계약체결 이후에 매도인은 즉시 물품인도를 위한 준비를 개시하였으나,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 등을 실패함에 따라 매도인이 인도기일의 연기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행을 거절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인은 다양한 이유로 협상을 지연하여 분쟁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은 다음의 배상을 청구하는 바이다.

(1) 시장가격에 따른 차액 US$ 451,512.20

(2) 보관비 US$85,016.50

(3) 시장가격과 보관비의 이자 US$10,729.51

(4) 중재비 US$16,100 및 변호사비 US$27,380

2) 매수인의 주장

매도인은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 매수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수량과 인도시기를 수정하고 계약위반에 관한 특별조항인 제2조를 삭제하였다. 중국계약법 제30조에 따르면 이러한 수정과 삭제는 수량과 이행기 그리고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은 청약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는 새로운 청약이 되어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나아가, 매도인은 홈페이지에서 쿼터를 이미 확보한 매수인과만 거래를 체결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쿼터를 확보하지 못한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을 위한 사전절차일 뿐으로 정식적인 계약의 체결은 아니다. 나아가,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의 이행연도를 삭제하였으므로 계약은 이행될 수 없었다.

따라서 매도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출장비와 변호사비용 RMB567,370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의 판단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의 수량, 이행기,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수정함에 따라 이를 반대청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청약의 수정 이후에 매수인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매수인은 중재 이전에 또는 협상 중에 매매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바 없다.

CISG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인이 서명하여 송부한 매매계약서는 청약을 구성하며 매수인의 조건변경은 반대청약에 해당된다. 즉, 매도인이 명시적으로 청약에 반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건변경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심리 중에 매도인은 매매계약서가 수정된 사실을 구두로 승낙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매수인의 조건변경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의 변경이 CISG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의 실질적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수량은 동일하다.

(2) 인도시기가 여전히 4월에 개시되며 3개의 인도가 4개의 인도로 변경된 것은 인도시기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조항의 삭제는 CISG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책임범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당사자 간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 협상, 논의와 CISG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여, 매매계약서가 공식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단계라는 매수인의 주장은 기각한다.

Ⅳ. 사안의 검토

1. 사안의 검토

1) 매도인의 매매계약서 송부

CISG 제18조 제1항은 청약의 요건으로서 ①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으로 ②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③ 승낙시에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으로 인정한다.

매도인의 매매계약서(sales confirmation)는 매수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으로, 물품과 수량, 대금 그 밖의 일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속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약이 된다.

2) 매수인의 변경을 가한 승낙

매도인은 매수인의 조건변경을 실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였으나 매수인은 스스로 변경한 조건이 실질적인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본 사건에서는 매수인의 조건변경의 성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매수인이 변경을 가한 청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량의 변경

매수인은 각각의 분할인도분에서 물품의 수량을 500톤, 700톤 그리고 800톤을 500톤씩 4개의 인도로 조정하였다.

CISG 제19조 제3항은 물품의 수량이 변경되는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로 규정하므로, 매수인의 변경이 일견 수량의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수인의 수량변경은 인도시기의 변경에 따른 전체수량에 대한 배분의 문제일 뿐 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전체수량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긍정된다.

(2) 인도시기의 변경

매수인은 인도시기를 2001년 4월, 5월, 6월에서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로 변경하여, 3회의 분할인도를 4회의 분할인도로 변경하였다.

CISG 제19조 제3항은 인도시기가 변경되는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로 규정하므로, 매

수인의 변경이 일견 인도시기의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매매계약이 분할인도를 예정하고 있고, 나아가, 매수인의 변경이 매도인이 물품인도를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시기도 아니므로, 인도시기의 변경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긍정된다. 다만, 확정기매매와 같이 인도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인도시기의 변경은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3) **계약위반의 책임범위에 관한 조항의 삭제**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위반에 관한 2개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매수인은 이를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조항이라고 주장하여 실질적인 변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매도인은 이를 부정하였다.

판정문은 삭제된 2개 조항의 세부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에서 '계약위반에 관한 책임조항(contract violation liability claus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미루어 판단하건대, 계약위반에 관한 책임조항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시에 피해당사자의 구제를 규정하는 것이 마땅한바, 이의 삭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내용에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CISG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변경으로 판단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즉, 매수인의 변경된 승낙은 반대청약이 되어 매도인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3) **매도인의 구두승낙**

중재판정부는 매매계약서의 변경조건을 매도인이 구두로 승낙하였다고 설시하면서, CISG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약자가 명시적으로 이에 반대하지 않는 한 청약자가 이러한 조건변경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의 구두응답을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의문이다. CISG 제96조는 "…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 일방이 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중국은 CISG 제96조의 유보국자 매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중국에 소재함에 따라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는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의 구두승낙은 CISG가 규정하는 승낙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협상의 과정 중 일부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계약의 성립

CISG 제23조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됨을 규정한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있어 승낙의 효력발생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매수인의 변경이 가해진 승낙은 반대청약이 되어 매도인의 승낙을 요구하게 되나, 매도인이 구두로 승낙함에 따라 청약과 승낙의 공식에 따른 계약의 성립은 불가하다.

다만, 매도인은 구두승낙 이후 2001년 2월 14일에 매수인과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승낙한 것으로 보아(제18조 제1항), 2001년 2월 14일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양당사자 간의 계약성립을 인정한 것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의 변경이 가해진 승낙을 비실질적인 것으로 보아 승낙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계약의 체결일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2. 관련 사례

1) Gulf Resources Development Co. Ltd. v. Hangzhou Hanggang Foreign Economic Co. Ltd.[32]

중국 매수인(피고)은 아랍에미레이트 매도인(원고)에게 ① 계약조건과 함께 ② 매수인이 거래조건을 수락하는 경우에 ③ 매매계약서를 송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발송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① 계약조건을 승인하면서 ② 구체적인 내용은 6월 11일 상담에서 논의할 것(“We confirm the above provisions; details will be discussed on 11 June”)을 내용으로 하는 회신을 발송하였다.

동년 6월 13일에 매도인은 6월 14일까지 구매를 확정할 것을 요청하는 팩스를 송부하였으나, 매수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수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매도인의 청약에 대한 매수인의 응답은 변경이 가해진 승낙이라고 판단하면서, 매수인은 청약에 대한 응답에서 명시적으로 지속적인 협상의 의사를 밝힌바 있으므로 이는 ‘제한을 포함하는 승낙’이 되어 청약에 대한 거절, 즉, 반대청약이 된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CISG 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의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되어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32) China 2002 Hang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 [District Court], http://cisgw3.law.pace.edu/cases/020002c1.html.

2) CIETAC 2002.6.10. **유채앙금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33]

스위스 매수인(신청인)은 2000년 6월 5일에 중국 매도인(피신청인)에게 유채앙금 1만톤에 대하여 US$78/톤 및 FOB Zhang Jia Gang, china의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하였다. 동년 6월 7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청약을 수락하면서 매도인에게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동년 6월 9일에 매도인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팩스로 수령하였다.

매수인은 계약서에서 "20년령 이상의 선박은 수리하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운송비 선지급" 조건을 "운송비는 용선에 따라 지급됨"이라고 수정한 이후에, 서명을 하여 동년 6월 9일에 매도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팩스를 수령한 매도인은 동년 6월 14일에 매수인에게 계약조건이 매수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이행도 연기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거래조건이 FOB규칙임에 따라 선박과 관련한 변경은 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의도는 매도인의 계약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여 중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청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매수인이 변경한 조건은 선박령과 운송비의 지급에 관한 사안으로서 거래조건이 FOB규칙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스스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변경한 조건은 CISG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매도인은 '적기'에 청약의 변경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 6월 14일에야 계약수락을 거절하는 의사를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 간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3) **계약체결 이후의 조건변경 사례**

(1) CIETAC 2003.4.18. **탈황시약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34]

중국 매도인(신청인)과 미국 매수인(피신청인)은 2001년 6월 28일에 CIF규칙으로 탈황시약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년 6월 29일에 매수인은 체결된 계약서에 수기로 FOB규칙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다. 이후 매도인은 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완료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중재를 신청하였다.

33) http://cisgw3.law.pace.edu/cases/020610c1.html.
34) http://cisgw3.law.pace.edu/cases/030418c1.html.

매수인은 자신이 변경한 거래조건은 CISG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반대청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매도인이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침묵하였으므로 CISG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서명은 명시적인 의사표현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정하였다.

(2) CIETAC 1996.3.29. **천연고무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35]

영국 매수인(신청인)과 태국 매도인(피신청인)은 1994년 9월 10일에 천연고무 1천 톤을 C&F Fengcheng, China US$1,300/톤의 조건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은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매도인은 선복을 예약하였다. 동년 9월 16일에 양당사자는 여럿의 팩스를 교환하였는데, 협상의 주된 내용은 매수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2천 톤급 이하의 선박에 선적"을 위한 선복예약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양당사자는 선적과 계약이행에 관하여 협상하는데 실패하여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C&F규칙인 경우에 매도인은 통상적인 선박을 수배하거나 용선하거나 선복을 예약하여야 할 것을 설시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은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선박을 사용하지 말 것을 매도인에게 요청하는 것이므로 특수조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수리여부는 매도인의 재량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물품의 선적은 매매계약의 주요조항 중 하나이므로, 매수인의 요청은 계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지 매수인의 주장대로 추가적인 요청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3) CIETAC 1993.4.1. **철강제품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36]

중국 매수인(신청인)과 미국 매도인(피신청인)은 철강제품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의 주요 부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인도지연에 따른 페널티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보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팩스를 통하여 ① 매수인의 청약을 명시적으로 승낙하면서 ② 공식적인 해제계약서의 초안을 요청하였다. 이후 매도인은 페널티를 지급하였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이 송부한 팩스는 반대청약일 뿐 승낙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손해의 전액배상을 주장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이 송부한 팩스는 CISG 제19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의 청약에 대한 반대청약이 아닌 '승낙'이라고 설시하면서, 해제계약에 관한 최종합의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여 매수인은 계약의 페널티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35) http://cisgw3.law.pace.edu/cases/960329c2.html.
36) http://cisgw3.law.pace.edu/cases/930401c1.html.

3. 소결

대상판정에서 CIETAC은 피청약자, 즉, 매수인의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을 비실질적인 것으로 보아 승낙으로 인정하면서도, 이후에 양당사자가 서명한 매매계약서를 계약의 체결로 인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첫째,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의 변경이 가해진 승낙을 비실질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조항이 CISG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적지 않다. 즉,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에 관한 내용은 구제조항에 관한 것인데, 구제조항과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조항 간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긍정하기 어렵다. 특히, 구제조항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 나아가, 매수인의 변경이 가해진 승낙은 비실질적인 것이어서 승낙이라고 하면서도,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의 변경된 응답에 대하여 매도인이 구두로 수락한 것을 승낙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CISG 가입시에 CISG 제96조의 유보를 선언하였다. 그 결과 중국당사자가 일방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CISG 제12조에 따라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는 서면 이외의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매도인의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를 승낙으로 인정한 점은 의문이다.

셋째, 중재판정부의 판단과 같이 매수인의 변경이 가해진 승낙이 비실질적인 것이고 매도인이 부당한 지체없이 그 상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 조건이 계약조건이 되어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비실질적인 변경이 가해진 승낙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상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효력이 중지되나, 청약자가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자에게 승낙이 도달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설시하는 바와 같이 변경된 조건을 승낙한 2001년 2월 14일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중재판정부는 매매계약서에 양당사자가 서명한 일자를 계약성립일로 보고 있다. 즉,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의 변경이 포함된 응답을 승낙이라고 인정한 이후에 매도인의 구두응답을 승낙으로 다시 인정하고, 나아가, 매매계약서에 양당사자가 서명한 일자를 종국적인 계약의 체결로 인정한다.

그러나 매수인의 변경된 응답이 비실질적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체없는 이의제기가 없는 이상 매수인의 응답이 매도인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논자의 주장과 같이, 매수인의 변경된 응답이 실질적인 경우에는 매도인에 의한 승낙이 요구되므로, 매매계약서에 양당사자가 서명한 것을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로 보아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분쟁발생시 우리기업의 유의가 요구된다.

Ⅴ. 결 어

당사자 간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유효성이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당사자 일방의 불이행 원인이 청약 또는 승낙이 CISG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계약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들이 존재하며, 특히, 청약자의 청약에 피청약자가 조건을 변경하여 응답하는 경우에 이를 승낙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CISG는 제19조 제1항에서 전통적인 법리에 따라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동조 제2항에서는 승낙을 의도하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고 규정하여, 승낙의 가부는 변경이 가해진 조건의 실질적 여부에 따른다. 실질적인지의 여부에 관한 기준은 동조 제3항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실질적인 변경으로 규정한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들은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변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변경의 여부는 개별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CIETAC은 CISG가 적용되는 대상판정에서 매수인이 청약에서 삭제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조항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실질적인 변경의 가장 원론적인 변경에 해당하므로, CIETAC에서 중재심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우리기업의 유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CIETAC은 청약을 변경하는 응답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종국적인 계약의 체결은 양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의 체결로 보았다. 이는 청약과 승낙의 공식을 규정한 CISG의 조문과 상충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작성을 정지조건으로 보는 우리법원의 입장과는 일치한다.[37]

나아가, CIETAC은 해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도 청약과 승낙의 공식을 적용하여 피청약자의 변경을 가한 응답이 승낙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은 흥미롭기까지 하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직후의 거래조건의 변경에 관한 협상과정에도 CIETAC은 변경된 승낙의 법리를 적용하였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37)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는 강호경, “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 서울고법 2013.7.19. 선고 2012나59871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지」제63권, 2014 참조.

것이지 이를 변경된 승낙으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것에는 의심이 적지 않으므로, 우리기업의 유의가 요구된다. 다만, CIETAC은 실질적이지 않은 피청약자의 변경에 대하여 청약자가 그러한 변경의 수령 5일 이후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적기의 이의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약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는 통설상 지체없는 기간이 3일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변경이 가해진 승낙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은 가능한 빠른 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체결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호경, “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 서울고법 2013.7.19. 선고 2012나59871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6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송수련, “CISG상 손해배상과 대금감액의 관계에 관한 중국 CIETAC의 중재사례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오원석, “청약을 변경하는 승낙(acceptance with modifications)의 효과와 문제점 - CISG 제19조를 중심으로-”, 「무역상무학회지」제2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_____·송수련, “CIETAC(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 및 CISG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제36권 제3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이기수·신창섭, 「국제거래법(제5판)」, 세창출판사, 2013.

지원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한국의 매매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학논총」제31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인하대학교출판부, 1997.

Bianca C. M. & Bonnell, M.J.,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è, 1987.

Farnsworth E. Allan, *Contracts*, Aspen Law & Business, 1999.

Schwenzer Ingeborg(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Schlechtriem Peter, *Uniform Sales Law - The UN-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nz, 1986.

Winship Peter, *Formation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under the 1980 Vienna Convention*, 17 International Lawyer, 1983.

ABSTRACT

A Study on CIETAC Case about Acceptance with Different Terms (Focus on CISG)

Ho-Kyung Kang

The wording of Article 18 shows that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is an acceptance. Meanwhile, Article 19 states that this reply with different term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offer. For example,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place and time of delivery,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However, this reply with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 or, without undue delay, objects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As a result, the acceptance depends on whether different terms are material or not.

CIETEC holds that the deletion of contract violation liability clause is not equal to an alteration to the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as stipulated in Article 19(3) of the CISG. In addition, CIETAC recognizes that one party had orally accepted the modifications made to the sales confirmation, with even China declaring against an oral contract. Lastly, CIETAC holds that the sales confirmation has been established when both parties signed on the sales confirmation instead of the acceptance being effective. Korean companies should, thus, note these issues when they solve disputes at CIETAC.

Key Words : CIETAC, CISG, Acceptance, Different Terms